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교대근무체계 개선,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 물품 차단 강화 및 수입물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 하고, 국민에 대한 관세행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을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5명(6급 15명)을 종전의 직급(8급 15명)으로 환원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12.13.~12.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규제개혁담당관”으로,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혁신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8.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규제개혁담당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장제3절의 제목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관비즈니스센터에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장·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부평지원센터장·구로지원센터장·통영지원센터장·대산지원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의 분장업무)”를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등)”을 “(지원센터의 명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관비즈니스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2조의3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전단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4,767”를 각각 “4,775”으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1”을 “62”로 하고, 관세서기 “1,013”를 “1,014”으로 하며, 해양수산서기 “96”을 “99”로 하고, 공업서기보 “5”를 “6”으로 하며, 해양수산서기보 “76”을 “78”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4,773”를 각각 “4,781”으로 하고, 관세주사 “853”을 “838”로 하고, 해양수산주사보 “61”을 “62”로 하며, 관세서기 “964”을 “980”로 하고, 해양수산서기 “93”을 “96”으로 하며, 공업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해양수산서기보 “74”를 “76”으로 한다.

별표 8의3의 제목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원 정원표”를 “관세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시·도명	세관명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및 경인항 주운수로 지역은 제외한다)·미추홀구(주안5동에 한정한다)·서구[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및 공촌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금곡동·오류동(경인항 인천터미널 및 그 물류단지와 주운수로는 제외한다)·왕길동·연희동·검암동·시천동·백석동에 한정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김포시(서울세관 및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충청북도	청주세관	충주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경기도	성남세관	의정부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경기도	파주세관	도라산지원센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
경상남도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부산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경남남부세관	통영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하이먼은 제외한다)·거제시 둔덕면
경상남도	경남서부세관	사천지원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읍·사남면·축동면·정동면·곤명면·곤양면·서포면·용현면은 제외한다)·남해군·고성군 하이먼
울산광역시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황성동에 한정한다), 울주군(온산읍 및 온양읍에 한정한다)
강원도	속초세관	고성지원센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고성 남북출입시설에 한정한다)
강원도	동해세관	원주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춘천시·홍천군·횡성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전라남도	목포세관	완도지원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대전세관	대산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태안군·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
충청남도	군산세관	보령지원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북도	전주세관	익산지원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u> 을 두되, <u>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u> 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u>비상안전담당관</u> 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규제개혁담당관</u> ----- ----- <u>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담당관</u>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u>	<삭 제>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④ <u>인사혁신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u>행정법무담당관</u> ----- ----- --.
1. <u>인력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u>	<삭 제>
2. <u>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u>	<삭 제>

3. <u>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u>	<삭 제>
4. <u>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u>	<삭 제>
5. <u>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u>	<삭 제>
6. <u>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u>	<삭 제>
<신 설>	7. <u>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u>
<신 설>	8. <u>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u>
9. <u>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u>	9. <u>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u>
<신 설>	10. <u>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u>
<신 설>	11. <u>법령질의 회신의 총괄</u>
11. ~ 16. (생략)	1. ~ 6. (현행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⑤ <u>규제개혁법무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u>규제개혁담당관</u> ----- ----- ----.
2. <u>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u>	<삭 제>
3. <u>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u>	<삭 제>
4. (생략)	1. (현행 제4호와 같음)
5. <u>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u>	<삭 제>
6. <u>법령질의 회신의 총괄</u>	<삭 제>

7. ~ 9. (생략)	2. ~ 4.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
12. (생략)	5.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7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의 분장업무)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 ----- -----.
13. (생략)	6.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32조(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지원센터의 명칭 등) ----- 지원센터-----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6장의2 관세인재개발원
제3절 세관비즈니스센터	제3절 지원센터	제32조의2(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2조의2(관세인재개발원) 관세인재개발원----- ----- -----.
제26조(세관비즈니스센터) ① 세관비즈니스센터에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둔다.	제26조(지원센터) ①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장----- -----.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인재개발원----- ----- -----.
②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장·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 ----- ----- ----- ----- ----- ----- ----- ----- ----- -----.	제33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제33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③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세관	③ 지원센터장-----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의 정보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세원심사과장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 관세인재개발원 ----- -----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⑦ 관세인재개발원 ----- ----- -----. ----- ----- -----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67</u>	· <u>4,775</u>	+8
일반직 계	· <u>4,767</u>	· <u>4,775</u>	+8
·	·	·	
·	·	·	
해양수산주사보	<u>61</u>	<u>62</u>	+1
·	·	·	
·	·	·	
관세서기	<u>1,013</u>	<u>1,014</u>	+1
·	·	·	
·	·	·	
해양수산서기	<u>96</u>	<u>99</u>	+3
·	·	·	
·	·	·	
공업서기보	<u>5</u>	<u>6</u>	+1
·	·	·	
해양수산서기보	<u>76</u>	<u>78</u>	+2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73</u>	<u>4,781</u>	+8
일반직 계	<u>4,773</u>	<u>4,781</u>	+8
·	·	·	
·	·	·	
관세주사	<u>853</u>	<u>838</u>	-15
·	·	·	
해양수산물조사보	<u>61</u>	<u>62</u>	+1
·	·	·	
·	·	·	
관세서기	<u>964</u>	<u>980</u>	+16
·	·	·	
·	·	·	
해양수산물서기	<u>93</u>	<u>96</u>	+3
·	·	·	
·	·	·	
공업서기보	<u>5</u>	<u>6</u>	+1
·	·	·	
해양수산물서기보	<u>74</u>	<u>76</u>	+2
·	·	·	